

2026학년도 1학기 『K-STAR 비자트랙』 우수인재 후보 선발 안내



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「K-STAR 비자트랙(Korea-Science & Technology Advanced Human-Resources Visa Track)」 사업과 관련하여 이공계열 외국인 대학원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K-STAR 비자트랙 우수인재추천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
□ K-STAR 비자트랙 사업 개요

- K-STAR 비자트랙(Korea-Science & Technology Advanced Human-Resources Visa Track)제도는 국내 대학에서 양성된 외국인 과학 기술 우수인재의 국내 정주 및 연구 지속을 지원하는 제도
- 대학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 역량이 우수한 외국인 대학원생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K-STAR 비자트랙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고, 최종 선발자에게 아주대학교 총장 명의의 K-STAR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

□ 주요혜택

가. K-STAR 체류자격(F-2-7S) 취득 가능

- *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 가능
- * 최초 최대 5년 체류 가능

나. 일정 요건 충족 시 다음 자격 신청 가능

- * 영주자격(F-5-S1) 신청
- * 우수 인재 특별귀화 신청

※ K-STAR 비자트랙 관련 세부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안내 참고

□ 지원자격 (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
가.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GPA 3.5/4.5 이상인 자

- ① 본교 석사학위 취득 예정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
- ② 본교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·수료생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
- ③ 석·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
- ④ 본교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교 박사후연구원(Postdoc)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에 참여 중인 자

나.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과학기술분야(참고1) 전공자 또는 연구 참여자

다. 논문·특허·과제·수상 등으로 본인의 연구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, 동시에 국내연구·취업·창업 및 한국어 학습 계획 등의 한국 정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

□ 신청방법

가. 신청기간

- 2026.07.31.(금) ~ 2026.08.10.(월) 오전 11시까지 (기한 엄수)

나. 신청방법

-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대학원교학팀(울곡관 305호)로 제출
- ※ 서류미비 시 신청 불가

□ 제출서류 (※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 및 제출)

no	제출서류	비고
1	K-STAR 비자트랙 신청서	필수
2	K-STAR 비자트랙 지도교수(연구책임자) 추천서	
3	K-STAR 비자트랙 지원자 윤리서약서	
4	K-STAR 비자트랙 결격사유 자가점검서	
5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
6	외국인등록증 사본 (앞, 뒷면)	
7	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(석박통합과정생의 경우 재학증명서)	
8	재직증명서(박사 후 연구원에 한함)	
9	성적증명서(최종학위에 한함)	
10	실적입증자료 (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실적) ① 논문 실적 : 논문 번호, 제목, 등재지, 저자명 등을 알 수 있는 해당 논문 1면 ② 학술대회 수상·발표: 상장사본 등 ③ 국내외 특허실적: 특허증(사본)	지원서 기재 시 필수
11	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표 (사본)	선택

※ 참고2, 참고3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비자신청 시 별도 제출 필요

□ 평가항목 및 기준

가. 서류평가(50점) : 학업성취역량, 연구역량, 지도교수추천서 등

나. 면접평가(50점) : 연구지속계획 및 사회기여도, 정주의지 및 적응력 등

□ 진행일정

가. 모집공고 및 서류 접수 : 2026.07.31.(금) ~ 08.10.(월) 오전 11시

나. 서류심사 및 면접 : 2026.08.11.(화) ~ 08.14.(금) 중

다. 최종결과발표(예정) : 2026.08.20.(목)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유의사항

- 1) 우수 인재로 최종 선발된 학생에게는 총장 명의의 '우수인재추천서'가 발급됩니다.
- 2) 해당 추천서는 발급 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1년 이내에 법무부에 거주비자(F-2-7S)로 직접 체류자격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.
- 3) 우수인재추천서는 F-2-7S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이며, 그 외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학생 본인이 직접 준비하여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4)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검토 후 제출해야 하며, 추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5) 제출 서류의 허위·과장 기재,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, 추천이 취소되거나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6)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7) 본 제도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, 관련 기준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문의처 : 대학원교학팀(grad@ajou.ac.kr)

대 학 원 교 학 팀

[참고1]

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

연구분야(5개)		대분류(22개)
과학기술	자연	NA. 수학 NB. 물리학 NC. 화학 ND. 지구과학(지구/대기/해양/천문)
	생명	LA. 생명과학 LB. 농림수산물 LC. 보건의료
	인공물	EA. 기계 EB. 재료 EC. 화공 ED. 전기/전자 EE. 정보/통신 EF. 에너지/자원 EG. 원자력 EH. 환경 EI. 건설/교통
인문사회과학	인문사회학	HF. 인문학 HG. 사회과학 HH. 문화예술체육학
	인간 과학과 기술	OA. 뇌과학* OB. 인지/감성과학 OC. 과학기술과 인문사회

* 인문사회과학분야 중 뇌과학 분야에 한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공 분야로 인정

※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 2023년 개정판

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기준

□ 제출 대상자

-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
 -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
- 단,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
 - ※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, 개별 사안에 따라 해외범죄경력서 징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, 해당 해외범죄경력서 제출

【해외범죄경력서 제출 면제 기준】

-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
-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
-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
-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*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
 - * 면제대상 포함
-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* 합법 체류한 사람
 - *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
-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,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(단,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)
 - ※ (예시)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
- 천재지변,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*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·사무소장·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(단,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)

[참고3]

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

□ 제출 대상자

〈사증 신청 시〉

-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*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(전자사증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제출)
 - *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(장기체류자격)를 의미(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도 장기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)
-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(C-4-1~4)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
- 과거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 출국 후 새로운 장기체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

〈외국인등록 시〉

-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
-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

〈체류허가 신청 시〉

-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
- 장기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중 16.3.2. 이후 사증 및 체류 허가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
-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한 경우
 - *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아님
(출국행선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결핵 고위험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)